

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5. 사업시행기간(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)
6.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
 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24. 11. 13.>](#)

  1. 사업의 명칭
  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·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
  3.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

**제11조(사업승계의 신고)**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·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양도·양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,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를 그 권리·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, 2015. 8. 6.>](#)

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>](#)

1. 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의 경우
  - 가. 양도·양수계약서의 사본
  - 나. 양수인(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
  - 다.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
  - 가. 합병계약서의 사본
  - 나.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
  - 다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
  - 라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0. 8. 4., 2012. 11. 29., 2013. 3. 23.>](#)

1. 사업의 양도·양수신고의 경우 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: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**제12조(사업의 휴업·폐업 등 신고)**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·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·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·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2. 11. 29., 2013. 3. 23.>](#)

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2.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

**제13조(행정처분의 기준)**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#### 제4장 물류창고업 [<신설 2022. 8. 24.>](#)

**제13조의2(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)**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(이하 "스마트물류센터인증"이라 한다)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<개정 2025. 4. 1.>](#)